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13 선고 2020가단81652(본소), 2021가단86654(반소) 판결
[약정금 및 사해행위취소 ·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 변호사 윤상구

피고(반소원고) 1. C

피 고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일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2018. 7.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7. 26. 접수 제65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2019. 5. 2.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5. 3. 접수 제39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 D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에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은 2020. 6. 1. 이전인 2020. 5. 25.이므로 위 청구취지 부분을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반소]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은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는 피고 C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각 차용증서의 존재

1) 피고 C가 작성자(차용인)로 되어 있고, 작성일은 '2018. 1.'로 되어 있으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들 앞으로 작성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데, 위 차용증서는 원고 A이 수기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피고 C가 작성자로 되어 있고, 작성일은 '2018. 1.'로 되어 있으며, '9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 B 앞으로 작성된 차용증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서'라고 한다)도 존재하는데, 위 차용증서 역시 원고 A이 수기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들은 피고 C 본인이 신청하여 2018. 1. 5. 12:46경 발급받은 피고 C의 인감증명서 2장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의 부동산 처분 및 취득

1) 피고 C는 서울 은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9. 5. 22. 전 배우자(G)로부터 같은 날짜 증여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10.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D는 2018. 7.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562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9957호로 2019. 5. 2.자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9. 5. 3.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관련 대여금 소송의 진행

피고 C는 2020. 2.경 원고 B 및 원고들의 딸 I을 상대로, 피고 C가 2008. 9. 1. 원고 B 및 I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미변제금을 구하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B는 위 소송 계속 중 원고 B가 이 사건 제2차용증서에 기하여 2018. 1. 5. 기준으로 피고 C에게 97,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04712(본소), 2020가단115385(반소),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약정금 청구

피고 C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수고해 준 보답으로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가 매각되면 각 100,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었음에도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약정금 각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 C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위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이 사건 제1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017. 1. 13.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위 대여금에 대해 원고들로부터 2018. 1. 5.까지 일부 변제를 받으면서 같은 날 위 변제에 대한 증거로 원고 B에게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잠시 맡긴 사실이 있는데 원고 B가 미리 작성해 온 이 사건 제1, 2차용증서에 피고 C 몰래 피고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용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고 이에 기해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제1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약정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200,000,000원을 증여하겠다는 증여계약인바, 피고 C의 2021. 8.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이 사건 제1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 이상의 돈을 변제받아야 할 상황이었었는데 원고 B가 이를 속이고 피고 C를 기망하여 위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과 피고 C 모두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가 2018. 1. 5.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데, 위 작성 날짜에 피고 C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장을 원고 B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 C는 당시 원고들로부터 기존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그 증거로서 위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 변제의 증거서류로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고 위와 같이 인감증명서만을 발급해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굳이 인감증명서를 2장이나 교부해 줄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서(2장)의 진정 성립을 위해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 C는 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원고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원고 B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인감증명서 신청인은 피고 C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C의 위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는 그 이전부터 돈 거래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작성 당시 원고 B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원고 B가 임의로 위 각 차용증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관련 소송에서도 이 사건 제2차용증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C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작성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과 피고 C는 이 사건 제1차용증서에 기재된 약정이 실질적으로 증여계약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차용증서 기재에 의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으므로, 피고 C는 이를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555조).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1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증여계약 해제 및 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5. 26. 이후로서1)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해 각 10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무자력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2018. 7. 25. 기준

① 피고 C의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300,000,000원, 원고들의 딸 I에 대한 원금 84,516,503원 및 이자 7,748,388원의 채권, J은행에 대한 7,799원 예금채권, K은행에 대한 150,823원 예금채권

② 피고 C의 소극재산

L조합에 대한 원금 149,581,487원 및 이자 351,854원의 대출 채무, 원고들에 대한 합계 200,000,000원 채무, 원고 B에 대한 97,000,000원 채무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일 2019. 5. 2. 기준

① 피고 C의 적극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300,000,000원, I에 대한 원금 84,422,736원 및 이자 2,545,128원의 채권, J은행에 대한 29,269원 예금채권, K은행에 대한 150,891원의 예금채권

② 피고 C의 소극재산

L조합에 대한 원금 147,774,416원 및 이자 568,079원의 대출 채무, 원고들에 대한 합계 200,000,000원 채무, 원고 B에 대한 97,000,000원 채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 K은행, L조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및 건축정책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제3자의 악의도 추정되는바, 피고 D가 선의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2017. 1. 13.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대여했는데, 이후 원고 A은 2017. 9. 25.부터 2017. 11. 17.까지 합계 9,000,000원을, 원고 B는 2017. 10. 16.부터 2018. 1. 5.까지 45,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원고 A은 나머지 41,000,000원을, 원고 B는 나머지 5,000,000원을 각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2017. 1. 13. 각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 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2021. 6. 1. 이 사건 반소장에서 원고 B에게 2017. 1. 13.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다시 2021. 8. 24.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B로부터 총 45,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B에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이전인 2020. 2. 11. 관련 소송의 소장에서는 위 시기에 원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모두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소 청구원인 부분에 관한 주장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 C와 원고들 사이에 각 50,000,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등의 문서도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위 날짜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별지

1)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위 약정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